

「2024년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모집 변경공고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이중구조 문제 개선과 숙련퇴직자 정년퇴직에 따른 재진입 지원을 위한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숙련기술자 고용유지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 2024. 7월 ~ 12월
- 지원대상 : 2024. 6. 3. 이후 계속고용*을 실시한 울산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또는 롯데케미칼(주) 협력사 사업주

* 계속고용기준 : (정년연장 또는 폐지) 60세 이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을 폐지하여 2024. 6. 3. 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60세 이상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단, 재고용 시점은 2024. 6. 3. 이후여야 함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원 지원 ※ 1개월당 60만원

2 사업추진 절차

신청서 제출	자격심사 및 선정·통보	지원협약 체결	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
희망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진흥원 ↔ 선정기업	선정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2024. 12월	2024. 12월	2024. 12월	2024. 12월	2024. 12월
■ 온라인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 ■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진흥원,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 2024. 12. 20.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상기업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

3

지원대상

1 기업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① 롯데케미칼(주) 협력사(우선선정)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석유·화학 제조업(C19, C20)’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분류	소분류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H	300명 이하
5. 정보통신업	J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라도, 사업참여 직전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해당

○ 2023.12.31. 이전부터 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가 아래(①, ②, ③) 사항 중 하나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시행 중인 기업

① 1년 이상의 정년을 연장(정년 연장형)

② 정년을 폐지(정년 폐지형)

③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 2024.6.3 ~2024.10.31.까지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을 완료한 기업

② 근로자 지원대상

- (계속고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정년이 연장(폐지) 되거나,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재고용되어 계속 고용된 자
 - (근로계약)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자
 - (보험적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상 지급 받는 자
- ※ 표준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9,860원), 통상일급(8시간 기준 78,880원), 통상월급(주 40시간 기준 2,060,74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함 (*25년 최저임금 인상시 인상분 반영하여 임금 지급)

지원 제외대상

<대상기업 기준>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④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 ⑤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동일 대상자 채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 ⑥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2.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 기준>

-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장려금 대상기간 중 혼인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변동 일자 전월 기준으로 지급 중단)
 -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③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
 - ④ 사업주가 대상자를 신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을 받는 경우
 - ⑤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⑥ 대상 기업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사업 대상자 계속고용일부터 장려금 지원대상기간 종료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장려금 대상기간 종료일: 장려금 대상자의 최초 고용일(정규직 전환일)부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며, 1년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를 말함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oil@ubpi.or.kr) ※ 관련문의 : 중장년일자리팀(052-283-7211)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선발기준 : 10명(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완료 기준 우선 선발
 - ※ 선정절차 과정 중 부적격 및 중도포기 기업 발생 할 경우 후순위 기업을 지정, 선발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2	사업주 확인서	[서식1-1]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처리에 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1-2]
4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서식1-3]
5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7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해당 업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장 카드	
8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5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적격한 기업을 우선 순서에 따라 선정통보
 - 순위 : ①롯데케미컬(주)협력사 ②협력사 외 기업 ※ 대상 요건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선정발표 : 2024. 12월 ~ (대상자별 접수 일자에 따라 상이함), 개별 통보
- 지원기간 : 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계속고용일 2024. 6. 3. ~ 2024. 10. 31.
 - 참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최대 12개월* 간 장려금 매월 지급
 -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수준 : 1인당 장려금은 월 최대 60만원, 1년 최대720만원(최대 12개월 지급)
- 지원한도 : 참여기업 1개사 당 최대 **2명** 한도까지 지원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 청구가 우려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장 정보	소 사 업 장 속 명		대 표 자	
	사 주 업 장 소			
	사 등 록 번 자 호		법 인 등 록 번 호	
	고 용 보 험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기업 구분	지 정 업 종	※ 울산광역시 관내 석유화학업 기업체(아래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19~C20 <input type="checkbox"/> 롯데케미칼(주) 협력사		
	상 시 근 로 자 수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input type="checkbox"/> 예 (상시근로자 수 : 000명)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우 선 지 원 대 상 업 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계 속 고 용 계 획	계 속 고 용 (예 정) 인 원	0명	계 속 고 용 유 형 별 인 원	<input type="checkbox"/> 정년 연장 (명) <input type="checkbox"/> 정년 폐지 (명) <input type="checkbox"/> 재고용 (명)
계 속 고 용 제 도 개 요	기 존 의 정 년 (정 년 시 행 일)	(년 월 일)	변 경 후 정 년 (정 년 시 행 일)	(년 월 일)
	재 고 용 시 행 일		재 고 용 기 간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귀하

첨부서류	1.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2. 사업주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4. 고용보험가입내역서 5. 우선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6. 사업자등록증 7.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	---

사업주 확인서 [참여 신청 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1.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총괄카드 또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말의 피보험자수로 판단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2. 지원 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란?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에서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계속고용)하기로 한 날	[] 확인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정년이 연장(폐지)되거나,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재고용(계속고용)되어 계속 고용 된 근로자 일 것	[] 확인
③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없는 자	[] 확인
④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확인
⑤ 주 15시간 이상 및 최저임금이상 지급자	[] 확인
⑥ 지원금 대상자를 계속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공제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시업"(이하 "계속고용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인원 한도 내에서 계속고용한 대상자 중,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 부족 등으로 '25년 기간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계속고용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계속 고용 기업 우선 지원) 수행기관은 계속 고용 장려금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계속고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의 정해진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 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대상자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정년연장·폐지, 재고용등의 제도운영으로 1년이상 계속고용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 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계속 고용 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장려금 수급요건,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1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말일까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이후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되, 채용일로부터 4개월, 5개월, ... 11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장려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장려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 지원금 지원 요건에 적정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려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장려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장려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장려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장려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계속고용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계속고용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취업규칙, 계속고용 및 근속 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장려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행기관) ○○ 수행기관장 (인)

(참여기업) ○○ 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퇴사자 명단 제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소 재 지			
담당자 정보	담 당 부 서		담 당 자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채용자 정보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채 용 일		퇴 사 일	
	퇴 사 사 유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 드 번 호			

**위와 같이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의
퇴사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2.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현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화면캡처 or 통지서 출력)
------	--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2) 계속고용 제도개요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체크 하세요(중복체크 가능) <input type="checkbox"/> 정년 연장형, <input type="checkbox"/> 정년 폐지형, <input type="checkbox"/>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년 월 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제도 도입 전 정년	제도 도입 후 정년 (재고용인 경우 재고용기간)

3) 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제도 시행일 전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예[] 아니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는 근로자입니다.	예[] 아니오[]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예[] 아니오[]

4)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속고용제도 적용				5) 마지막 근무일
		1) 제도유형 (해당 유형에 √표 기재)	2) 제도 변경전 정년 도달일	3) 제도 변경후 정년 도달일 (정년연장형만 기재)	4) 재고용 근로계약기간 (재고용형만 기재)	
		정년연장 <input type="checkbox"/>				
		정년폐지 <input type="checkbox"/>			~	
		재고용 <input type="checkbox"/>				
		정년연장 <input type="checkbox"/>				
		정년폐지 <input type="checkbox"/>			~	
		재고용 <input type="checkbox"/>				
		정년연장 <input type="checkbox"/>				
		정년폐지 <input type="checkbox"/>			~	
		재고용 <input type="checkbox"/>				

기업명의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급 중단	2025년 사업 중단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25년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u>안내 받음</u>) ※ 자필 작성 <input type="checkbox"/> 확인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확인을 위한 서류 - 채용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재고용형인 경우는 재고용시 근로계약서 추가 2.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4.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5.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6. 기타 지급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요청시)
------	--

사 업 주 확 인 서 (장려금 신청 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	[]에 []아니오
② 2023.12.31. 이전부터 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정년 연장·폐지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에 []아니오
③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 정년폐지, ㉢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에 []아니오
④ 소비·향락업, 근로자 공급업 및 근로자 파견업이 아닌 기업	[]에 []아니오
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이 아닌 사업주	[]에 []아니오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지 않은 사업장	[]에 []아니오
⑦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되지 않은 사업장	[]에 []아니오
⑧ 장려금 대상자 계속고용일부터, 지원 대상자의 지원 대상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대상자를 인위적인 감원(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에 []아니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기업	[]에 []아니오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장려금 신청 시 기준)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란?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에서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계속고용)하기로 한 날	[]에 []아니오
②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정년이 연장(폐지)되거나,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재고용(계속고용)되어 계속 고용 된 근로자 일 것	[]에 []아니오
③ 사업주(사업주의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가 없는 자	[]에 []아니오
④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에 []아니오
⑤ 주 15시간 이상 및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에 []아니오

기타	
장려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에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사업자등록여부 등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연락처)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년 월 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